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4. 16.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86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4. 2.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 나. 상정의결
 -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4. 16.)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권 의원)

-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위기를 맞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재난 발생 시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용자에 대한 이자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용자에 관한 이자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의 2)
- 다. 참고사항
 -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해당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해당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회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범위에서 유지되어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우리 구에서도 관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용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 구가 지원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4조에 따라 4가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바 ‘1)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지원, 2)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3)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 지원, 4)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용자지원’ 사업임. 이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1)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지원(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용자에 관한 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의2(재난시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용자에 관한 이자 지원) 신설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¹⁾에 따른 재난 시에는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용자에 관한 이차차액²⁾ 일부 보전’을 ‘용자에 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이차차액(이차보전[利差補填]): 정부(지자체)가 가계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할 때 금리 차이를 정부(지자체)가 메워 주는 일. 즉, 수혜자는 정부(지자체)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 받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똑같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음.

원' 으로 확대하여 우리 구가 지원하려는 것임. 즉, 제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
난시에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용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만, 이자 지원에 대
한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6
----------	-----

발의연월일 : 2021. 4. 2.
발 의 자 : 김영권·문백한·이향숙·
이재민·복진경·이상애
(이상6인)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위기를 맞은 관내 중기업을 위해 재난 발생 시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용자에 대한 이자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용자에 관한 이자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난시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용자에 관한 이자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용자에 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7조의2(재난시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용자에 관한 이자 지 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협력 기 업자금 용자에 관한 이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